

ONE KB기업종합보험



상품안내

보장내용

가입예시

알아두실 사항



ONE KB기업종합보험이란?

업종별 맞춤형 종합설계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기업성 종합보험입니다.

01 사업장의 각종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!

- 화재위험, 배상책임, 기계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
- 2종 이상의 위험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
- 사업장별 통합 리스크 분석을 통한 꼭 필요한 보장내용으로 맞춤형 종합 컨설팅

02 패키지 할인까지 가능합니다.

- 보장별 보험료의 비중에 따라 최대 10% 패키지할인이 가능

03 주요 가입대상

- 일반물건(음식점, 판매시설, 노래방, 교회, 사무실 등)
- 공장물건(금속가공, 전기전자, 플라스틱 제조, 식료품 가공, 인쇄 등)

● 주요 보상하는 손해

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합니다.

○ 화재 손해

▣ 화재 위험	화재에 따른 직접손해, 소방손해,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잔존물 제거비용(손해액의 10% 한도) 및 손해방지비용 (사고 발생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한 비용) 추가 지급함
▣ 전기 위험	전기기기 및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
▣ 구내 폭발 위험	구내에서 발생한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
▣ 냉동(냉장) 위험	구내에서 화재로 냉동장치 등의 온도변화로 냉동(냉장)물에 손해 발생한 경우
▣ 풍수재 위험	태풍, 회오리바람, 폭풍, 폭풍우, 홍수, 해일,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
▣ 신체 손해배상 책임	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사망, 부상에 대하여 건물소유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 보장

○ 배상 책임

▣ 생산물 배상 책임	피보험자가 제조, 판매,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
▣ 가스 사고 배상 책임	가스 사용자가 가스의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
▣ 임차자 배상 책임	임차한 건물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임대물건의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
▣ 시설 소유 배상 책임	피보험자가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타인의 신체손해 및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

○ 기계 손해

▣ 기계 위험	기계의 구조 또는 재료의 결함, 물리적 폭발 등으로 인하여 기계에 발생한 물적 손해
---------	--

○ 화재보험 가입시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(자세한 내용은 ONE KB기업종합보험 보통약관 제38조(지급보험금의 계산) 참고)

· 일반물건

〈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% 해당액과 같거나 큰 경우〉

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(단,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)

〈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% 해당액보다 작은 경우〉

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×보험가입금액/보험가액의 80% 해당액

※ 일반물건: 음식점, 판매시설, 노래방, 교회, 사무실 등

· 공장물건 및 재고자산

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×보험가입금액/보험가액

※ 공장물건: 금속가공, 전기전자, 플라스틱 제조, 식료품 가공, 인쇄 등

※ 재고자산: 원부재료, 제품품, 반제품, 제품, 부산물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

상품안내

보장내용

가입예시

알아두실 사항

- 보험가액 :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가액 (실질적 가치액)
- 보험가입금액 :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에 약정한 계약상의 금액으로서, 화재사고 시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최고한도액
- 일부보험(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미달한 경우)가입 시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의 전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초과 보험 (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) 가입 시 그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.

● 보상하지 않는 손해

해당상품은 상품특성상,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열거항목들이 많아 주요 보상하는 손해로 대신합니다.

☑ 이용안내

-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,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상품안내

보장내용

가입예시

알아두실 사항

● 가입예시

위험구분	업종	보험가입금액 및 산출기준	보상한도	보험료(원)
화재손해 위험	화재담보 (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)	보험가입금액 : 11억원 건물급수 : 1급 건물층수 : 3층	가입금액 한도	234,600
배상책임 손해위험	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(모텔)	객실수 : 40개	대인 : 인당보상한도 : 1억원 사고당보상한도 : 1억원 사고당 공제 : 10만원 총보상한도 : 무한	367,943
			대물 : 사고당보상한도 : 1억원 사고당 공제 : 10만원 총보상한도 : 무한	
	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(시가지 광고판)	면적 : 9.9m2	사고당보상한도 : 1,000만원 사고당 공제 : 10만원 총보상한도 : 무한	157
합계 보험료				602,700

TIP

- 01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.
- 02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,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03 위 보험료는 성별, 연령과 무관하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, 납입기간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● **보험기간**

-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. 그러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
● **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
-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료납입기간,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,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·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,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,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● **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**

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(공제계약 포함)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의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

● **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**

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해 드립니다.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,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경비로 사용되므로,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(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)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.

● **예금자 보호안내**
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1억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1억원까지" 보호됩니다.(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)

● **개인정보보호안내**

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, 유지,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, 이용,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,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, 유지,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● **보험분쟁조정안내**

보험상당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센터(1544-01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(국번없이 1332, <http://www.fss.or.kr>)

●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

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,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,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
[전문금융소비자]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,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회사,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] 제2조(정의)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.

● 품질보증제도

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(도장을 찍음)을 하지 않았을 경우,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,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(사이버몰)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● 설명의무

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● 지급제한

지급한도,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● 계약 전 알릴 의무
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(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)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(이하 '계약 전 알릴의무'라 하며, 상법상 '고지의무'와 같습니다) 합니다.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● 화재보험 알아두셔야 할 사항

보험계약체결시,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(이하 "보험가액")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 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.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가액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(보험가입금액>보험가액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.